

한국체육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0. 3. 5. 제524호
개정 2012. 3. 28. 제59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체육대학교 구성원간의 성희롱 및 성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성적행동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와 함께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③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교수 (외래강사 포함), 직원(계약직, 용역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이 가해자, 동조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 및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4조(업무) ①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업무는 종합인력개발원 상담부 (이하 “상담부”라 한다)에서 담당하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및 기록

2.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필요한 조치

3.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위원회 처리요청 및 보고

4.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학내 성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②사건의 신속한 처리, 피해자 보호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신고 접수, 상담 및 기록 등
의 업무는 종합인력개발원에 설치된 상담실에서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①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종합인력개발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본교 교원, 직원, 학생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2인 이내로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학생
이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만 참여한다.

⑤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성희롱 및 성폭력 처리에 관한 사항
3.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상담부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경우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7조(신고 및 접수) ①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피해내용을 서면, 전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피해 신고를 한다.

②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상담부 이외의 학내 기관 및 학생자치기구에서 신고를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지
체없이 이를 상담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조사 및 보고) ①원장은 신고가 접수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요구
에 따라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상담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 및 처리) ①위원회는 제8조에 의하여 조사·보고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 2.加害者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사과 등의 지도
 4.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유·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5.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치
- ②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0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함을 전제로 한다.
-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④ 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동의없이 피해자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⑤ 사건처리 담당자는 사건처리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과정에 있는 한 피신고인 혹은 가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사건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학교는 사건처리 담당자가 가해자 및 내·외부의 협박이나 일체의 압력 또는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단, 이는 사건처리 담당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경비) 상담부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0. 3. 5. 제5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한국체육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2012. 3. 28. 제59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